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명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96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2. 3. 24.

발 의 자 : 조명희 · 유경준 · 추경호
박성민 · 홍문표 · 박대수
이종배 · 김성원 · 성일종
김태흠 · 이주환 · 황보승희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3년 1월 1일부터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·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(이하 “가상자산소득”이라 함)은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20%의 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임.

같은 날부터 부과될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천만원을 기본공제하고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0%,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 25%의 세율을 적용할 예정인데, 금융투자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소득세의 기본공제 금액과 세율을 금융투자소득세와 동일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도 5천만원을 기본공제 금액으로 하고,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20,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

초과액에 대하여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(안 제64조의3 제2항 및 제84조 제3호).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4조의3제2항 중 “250만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”를 “5천만원을 뺀 금액(이하 “가상자산소득과세표준”이라 한다)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”로 하고, 같은 항에 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상자산소득과세표준	세 율
3억원 이하	100분의 20
3억원 초과	6천만원 + (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)

제84조제3호 중 “250만원”을 “5천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
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64조의3(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) ① (생략) ② 제21조제1항제27호의 소득 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 소득금액(이하 “가상자산소득 금액”이라 한다)에서 <u>250만원</u> 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 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 <신설>	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64조의3(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5천만원 을 뺀 금액(이하 “가상자산소득 과세표준”이라 한다)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-----.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가상자산소득과세 표준</u>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세율</u></td>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3억원 이하</u>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100분의 20</u></td>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3억원 초과</u>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6천만원 + (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)</u></td></tr> </table>	<u>가상자산소득과세 표준</u>	<u>세율</u>	<u>3억원 이하</u>	<u>100분의 20</u>	<u>3억원 초과</u>	<u>6천만원 + (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)</u>
<u>가상자산소득과세 표준</u>	<u>세율</u>						
<u>3억원 이하</u>	<u>100분의 20</u>						
<u>3억원 초과</u>	<u>6천만원 + (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)</u>						
제84조(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)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 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다. 1. 2. (생략)	제84조(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) - ----- ----- ----- -. 1. 2. (현행과 같음)						

3. 해당 과세기간의 가상자산소득금액이 <u>250만원</u> 이하인 경우	3. ----- ----- <u>5천만원</u> ----- -----
4. (생략)	4. (현행과 같음)